



하비에르 국제학교 재무 규정 2011 / 2012

1. 2011 / 2012 학년도 학비

- ① 입학금 : 3,000,000 원
- ② 등록금
 - 초등학교 : 10,170,000 원
 - 중학교 (중 1- 4) : 12,000,000 원
 - 고등학교(고 1-3) : 13,500,000 원

2. 등록금 상세 내역

2.1 등록금에는 다음 내역이 포함.

- ① 수업료
- ② 초등학생 야외 활동비
- ③ 교과서 대여(분실된 책이나 손상된 책은 학부모가 배상.)
- ④ 급식비
- ⑤ 학생보험료
- ⑥ 초등학교 공책 및 문구류

단, 다음 사항은 위의 등록금에 포함되지 않음 :

- ① 워크북과 중고등학생 문구류
- ② 교외활동 참가비(중학교 및 고등학교), 학교특별활동 참가비 (미술, 사진클럽, 영화 감상회 등)
- ③ 자격시험 응시료 (바칼로레아, 기타 본인이 원해서 참가하는 경우)
- ④ 교복비

2.2 입학금

- ① 입학금은 본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에게 적용된다.
- ② 입학금은 어떤 경우에도 환불불가.
- ③ 신입생은 학교가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완전히 갖추어 제출하고, 입학금과 등록금 납부확인 (15 일 이내로)이 되었을 때 학생의 등록이 완료된다.

2.3 감면혜택

본교에 세 자녀 이상이 재학할 경우 각 학생 당 등록금의 5% 감면혜택이 있다.
등록금을 2011년 8월 20일 이전에 전액 지급하는 경우에는 2%의 감면 혜택이 있다.

3. 등록금 납부규정

3.1 원칙 : 등록금 지급에 대한 책임은 직계가족에 해당.

- ① 개학하기 전(2011년 8월 20일 이전)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.
- ② 신입생의 경우 2011년 6월 25일까지 전액 지급한다.
전액 지급이 어려울 때 2011년 6월 30일 이전 본교 재무실과 협의 할 수 있다. 재무실이 동의하에 해당 서류를 작성하고, 납부 날짜를 준수 한다
- ③ 만약 등록금 납입 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입학취소를 할 경우 등록금의 10%을 제외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.

3.2 등록금 납부방법 :

- 원화로만 납부 한다.
- 송금 : 국민은행, 예금주 : 하비에르 국제학교
계좌번호 : 923201-01-043739



- 현금납부는 불가하다.
- 입금시 학생명과 학년 명시바람. 타명 송금시 전화 연락 한다.

3.3 등록금 환불 규정

- ① 원칙적으로 등록금은 환불 불가하다.
 - 교장 및 담당교사의 권한으로 부득이하게 학교를 퇴교할 경우
- ②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도 입학금 환불은 불가하며 해당학기의 등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 받을 수 있다.
 - 학부모의 직업상의 이유로 학교를 떠날 경우
 - 가족문제·학생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를 떠날 경우

3.4 학기 중 편입하는 경우 등록금납부액

- 10 월 1 일 이후 등록금의 90%
- 11 월 1 일 이후 등록금의 80%
- 12 월 1 일 이후 등록금의 70%
- 1 월 1 일 이후 등록금의 60%
- 2 월 1 일 이후 등록금의 50%
- 3 월 1 일 이후 등록금의 40%
- 4 월 1 일 이후 등록금의 30%
- 5 월 1 일 이후 등록금의 20%
- 6 월 1 일 이후 등록금의 10%

4. 기타사항

4.1 제반 관련 서류

- ① 연말 세금공제 혜택을 위한 등록금 납입증명서: 최소 2 일전 수수료 1000 원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서 안내실에 제출하고 익일 수령한다.
- ② 등록금의 50%(12 월 31 일 기준)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금 납입증명서 및 제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.

4.2 기숙사와 스쿨 버스

- ① 기숙사생은 기숙비(매달 1 인실 510,000 원)를 매학기의 시작 전(8/15, 12/15, 3/15)에 납부한다. 10 개월의 기숙비를 일시 납부할 경우 2%의 감면혜택이 있다.
- ② 개인사정으로 임시 퇴사를 할 경우, 사용 중인 기숙실을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다면 관리비로 1 달 10 만원을 지불해야 한다.
- ③ 학교 당국에 의해 부득이 하게 퇴사할 경우 기숙비 전액환불 불가 하다.
- ④ 스쿨버스비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환불 할 경우에도 수령액수에서 위약금 50%를 지불한다.

4.3 학생보험

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병원치료를 받은 학생은 증빙서류(진료비와 약국의 영수증 등)를 재무실에 제출하여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소정의 보험료를 보상받을 수 있다.